안산대학교	감염병관리규정	규정번호	3-1-2
		제정일자	2019.08.01.
		개정일자	2020.06.01.
		개정차수	1차
		소관부서	학생성공처 (보건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육 및 연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이란 사람에게 침입한 특정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을 말한다.
2. 감염병(의심)환자란 의료기관의 진료 결과 감염병 확진을 받았거나 의사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유행이란 한 지역사회나 집단에 감염병이 평소에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방역물품이란 감염병(의심)환자 발생 시 발열감시, 전파차단 조치, 격리 및 평상시 손씻기 실천, 학교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대학 내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및 기타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감염병관리위원회

제4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 대외협력처장, 행정지원처장, 전략기획처장과 그 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염병 관리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방역물품 공급 및 방역 계획
3.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
4. 감염병 관리 예산 및 결산
5. 기타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대학의 주요 정책

제3장 감염병 관리 조직

제10조(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 ① 총장은 대학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리 조직을 구성 한다.

② 감염병 관리 조직은 감염병 총괄관리자, 감염병 발생감시관리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한다.

제11조(감염병 총괄관리자) ①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학생성공처장이 된다.

② 감염병 총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 지휘
2.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체계의 구축
3. 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 및 관리
4. 감염병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역학조사의 협조

제12조(감염병 발생감시관리팀) ① 감염병 발생감시관리팀은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학과장, 부서장, 예지관장, 보건실 직원(보건교사)으로 구성한다.

② 감염병 발생감시관리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장은 학과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동시 다발로 2명 이상 감염병으로 결석이나 결근이 있는지 감시하여 감염병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부서장은 직원의 출결사항을 파악하고 동시 다발로 2명 이상 감염병이 있는지 감시하여 감염병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예지관장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와 근무자들이 동시 다발로 2명 이상 감염병이 있는지 감시하여 감염병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 보건실 직원(보건교사)은 질병으로 인하여 내실하는 환자들의 감염병 징후를 파악하고 감염자들의 추후관리를 하며, 감염병 유행이 파악되면 감염병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3조(예방관리팀) ① 예방관리팀은 관리팀장과 보건실 직원(보건교사)으로 구성한다.

② 예방관리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팀장은 대학 내 시설물을 점검하여 감염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위생을 조성하며, 방역 및 소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보건실 직원(보건교사)은 대학 구성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홍보, 감염병 예방교육 및 상담,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 기타 필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14조(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은 교무학사팀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유행 확산으로 인한 학사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휴업을 실시한 경우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5조(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은 기획예산팀, 학생지원팀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4장 감염병 관리 및 조치사항

제16조(예방접종)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대학 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실시를 권고하고, 이에 대한 상담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기숙사에 입소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입소 전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보건의료 전공 계열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실시하기 이전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장한다.

4. 해외 전입 학생들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여부를 확인한다.

제17조(방역) ① 관리팀장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② 감염병(의심) 환자 발생 또는 유행 시 긴급으로 임시 소독을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